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2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김문수・이수진・양부남

이재강 • 이용우 • 이재관

문금주 • 조계원 • 양문석

위성곤 • 민형배 • 백승아

박지원 • 이광희 • 문대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 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의미함.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 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 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를 "그 신분을 이유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 을 이유로-----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 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 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단서 삭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 <삭 <u>제></u> 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 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 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 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 석비서관 • 비서관 • 비서 • 행 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 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 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 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 한다.

-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

 한 사립학교의 교원
-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

 원의 신분을 가진 자
-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 (생 략)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장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삭 제>